

# 대관규칙 동의서

**제1조 (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반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원활한 대관(이하 대여를 포함 함)을 진행함에 있다.

**제2조 (대관료)** ① 대관료는 무료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비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필요한 경우 대관과 관련하여 재단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대관기간)** 대관기간은 재단이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대관승인)** ① 재단은 대관신청 접수 시,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② 재단은 대관승인 여부를 별도의 서면으로 이메일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 팩스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대관 승인 시, 별도의 승인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승인 조건은 본 대관규칙 동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대관신청의 제한 및 승인 취소, 사용 중지)** ① 재단은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하거나, 기존에 승인된 대관 행사의 승인을 취소 또는 재단 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 또는 내용의 행사(이하 모임 등을 포함 함)
2. 특정종교, 정치적인 목적, 기타 재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3. 안전사고나 질서관리 위험이 높은 행사
4.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사
5. 재단의 시설/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행사
6. 허위의 내용으로 대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한 경우
7. 재단의 운영정책 상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6조 (대관내용 변경 및 취소)** ① 모든 대관 일정과 내용은 승인 받은 대로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대관 일정과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제7조 (시설 및 장비 등의 변경과 반입)** ① 대관자는 재단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변경을 가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설비 등을 반입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조정의 예치금 부담 또는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재단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사용 후 즉시 원상 복구시켜야 하며, 반입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고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④ 대관자가 승인된 기간보다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치금에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재단이 대관자의 반입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대관자에게 변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대관자는 사전 승인되지 않은 설비 등을 반입할 수 없다.

**제8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재단의 운영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시설물의 훼손 등 재단 또는 제3자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배상한다.

③ 대관자는 재단이 제3자로부터 대관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재단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재단의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④ 갤러리 등 미술작품 전시를 위한 대관자 중 직업 작가, 등단 작가 등의 미술작품에 대해서 대관자는 각종 재해 사고 또는 제3자 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 분실 등이 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사전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사본을 재단에 작품설치 이전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재단이 승인한 경우 보험가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미술작품 전시를 위한 대관자는 이용자 등 제3자에 의한 미술작품의 훼손, 분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이나 배상 등을 재단에 물을 수 없다.

⑥ 공연 행사 등 이용자의 안전 사고 우려가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대관자가 진행하는 경우,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이를 배상하는 보험에 행사 전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사본을 재단에 행사일 이전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재단이 승인한 경우 보험가입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등 협조)** ① 대관자가 대관행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홍보물에 재단을 지원기관으로 명시한다. 다만, 재단이 명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와 대관자가 재단과 사전 합의한 경우에는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대관자는 대관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진행 시, 재단의 명칭 등 재단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 재단의 동의하에 진행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행사 홍보물을 재단 공간에 설치, 게시 또는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대관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경우, 대관행사 관련 사전 실무협의(스텝회의)에 응해야 한다.

⑤ 대관자는 재단이 대관행사 사진을 촬영하고, 홈페이지, 소식지(온/오프라인) 등에 게재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대관자가 사전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거나, 특정 조건을 제시한 경우 재단은 이를 수용 한다.

**제10조 (행사결과 제출)** ① 대관자는 대관행사의 결과(참석인원수, 행사사진 등)를 재단의 소정 양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한다. 다만, 재단과 사전 합의한 경우에는 제출 양식을 변경하거나 제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구두 전달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효력)** 본 규칙은 재단과 대관자 간의 계약으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2조 (규칙 외 사항)**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의 관련 규정 또는 법령이나 관례에 따른다.

**제13조 (관할법원)** 본 규칙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재단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대관규칙에 동의하며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대표자 :

(서명/인)

반도문화재단 귀중